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083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정 지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4. 24.

다. 회 부 일 : 2025. 4.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종업원소유제도는 종업원들이 자사 주식을 장기 보유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윤공유와 참여경영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핵심적 정책 수단을 말함. 이는 자본 소유의 편중 해소와 노동 소외 문제를 직접적으로 시정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자산 증대와 고용 안정성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한국형 종업원소유제도로써 우리사주제도는 현재 우리사주 지분율이 미미한 수준이고 보유기간도 단기에 그치는 등 제도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미국, 영국과 달리 주주들의 보유지분 매각에 대한 특별한 이익 동기가 없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음.

한편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CEO 고령화로 인한 기업승계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나 경쟁사 매각, 가족 승계 등이 주요 승계방안으로 거론되나,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주주의 보유지분 종업원 매각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와 바람직한 기업승계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이는 고용유지, 참여를 통한 혁신, 불평등 완화, 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경제민주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

주요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안 제89조제1항제6호).

Ⅲ. 검토의견

1.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현행	개정안
□ 비과세 양도소득(제89조)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1호부터 5호에 규정된 소득) <신설>	□ 비과세 양도소득 범위 확대 ○ (현행과 같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현행 「소득세법」 제89조¹⁾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분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 비과세 양도소득의 대상을 열거하고 있음.

□ 개정안은 비과세 양도소득의 대상에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2)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려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를 의미하고, 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의미함.

□ 이러한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3).

□ 우리사주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우리사주제도의 전신인 종업원지주제도4)가 1968년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도입되었는데, 이후 정부는 1974년 5월 29일 기업의 체질개선과 내자동원을 위한 조치로 우리사주조합의 결성을 촉구하는 대통령 특별

2)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5. “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3)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우리사주조합의 목적)

4) 종업원지주제도는 종업원들이 자사 주식을 장기 보유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이윤공유와 참여 경영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핵심적 정책 수단을 말하며, 우리사주제도는 한국형 종업원지주제도로 할 수 있음.

조치 발표 이후 같은 해 7월 13일 재무부장관이 종업원지주제도 확대실시 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리사주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 2001년 「근로복지기본법」이 제정되어 2002년부터 시행되면서 소위 성과배분형·이윤공유형의 ‘신 우리사주제도’가 도입됨. 이전 세제지원에 더하여 이뤄진 주요 세제지원으로는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또는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을 법인세 계상시 전액 손비로 인정하고⁵⁾,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신설을 통해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우리사주 배정 시 소득세 비과세,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우리사주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우리사주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비과세 등의 내용임⁶⁾.

□ 2025년 5월 기준⁷⁾ 총 3,838개의 법인(1,951개 상장법인 및 1,887개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였고, 1,425개의 법인(805개

5)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6.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6)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제1항, 제8항)
- 우리사주조합 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제2항)
- 우리사주 배정 시 소득세 비과세(제3항, 제4항)
- 우리사주 조합원의 인출금에 대하여 조건부 비과세(제5항, 제6항)
-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제9항)
-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제13항)
- 우리사주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우리사주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양도소득 비과세(제14항)

7) 한국증권금융 홈페이지, 「통계자료」

상장법인 및 621개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를 한국증권금융에 위탁⁸⁾하고 있음. 또한,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20%를 우리사주조합원에 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⁹⁾.

[우리사주조합 결성 현황(2025. 5. 기준)]

(단위 : 조합)

구분	유가증권	코스닥	비상장	총계
결성 조합수	720	1,231	1,887	3,838

자료 : 한국증권금융 홈페이지

[우리사주 예탁 현황(2025. 5. 기준)]

(단위 : 조합, 천주, 천만원)

구분	유가증권	코스닥	비상장	합계
예탁 조합수	321	484	621	1,426
예탁 주식수	321,299	65,542	78,467	465,308
시가	921,200	55,859	61,531	1,038,590

자료 : 한국증권금융 홈페이지

8)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우리사주의 예탁 등)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조(수탁기관)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회사를 말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수탁기관) 영 제22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말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법인”이라 한다)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여러 세제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사주조합 결성률과 예탁률이 낮은 수준이고, 보유기간도 단기에 그치는 등 제도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우리사주 지분이 존재하는 상장기업이 884개(분석대상 상장기업의 36.7%)로, 이들 상장기업의 우리사주 지분 평균이 1.08% 수준임¹⁰⁾. 또한, 2015년¹¹⁾ 정부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당시, 취득한 우리사주를 단기 매도(5년 미만 보유 비율 51.2%)하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함¹²⁾.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4항¹³⁾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주식을 해당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 3천만원 이하까지는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권상장법인 소속 우리사주조합원(소득세법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예탁 중인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2항¹⁴⁾에 따라 조합 등에 매도하지 아니하고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10) 자본시장연구원, 「국내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현황과 특징」, 『이슈보고서』 24-20, 2024. 10. p. 5.

11) 정부 발표기준 최신 자료

12) 관계부처 합동,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2015. 2.

* 우리사주 보유기간 분포(% , '14년말) : (1년 미만) 12.1, (1~2년) 10.8, (2~3년) 9.5 (3~4년) 10.4 (4~5년) 8.4 (5년 이상) 48.8

13)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⑭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해당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양도소득에 포함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경우에도 양도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4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은 실질적으로 주권비상장법인 소속 우리사주조합원에 게 주로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음.

개정안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4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퇴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더해,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양도소득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와 바람직한 기업승계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비추어 주주의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와 바람직한 기업승계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첫째, 대주주나 우리사주조합원 등 주식보유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줄임으로써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이 활성화되면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복지 증진,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 발전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적 이익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

2023년 기준 우리사주 지분이 존재하는 국내 상장기업의 우리사주 지분 평균이 1.08%에 불과한데, 이는 대주주의 우리사주 출연비율이 낮고 근로자들의 우리사주 보유 비율이 미미한 수준임을 의미

14)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우리사주의 인출 등)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원 순서로 우선하여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하므로,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통해 대주주 입장에서 자신의 지분을 시장보다는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하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으면 근로자가 주식을 보다 쉽게 현금화할 수 있으므로 현금유동성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 양도에 대한 비과세는 주식 대량 보유자나 고소득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정 집단에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일반 투자자나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2023년말 기준 국내 상장기업의 주주 유형별 지분 평균을 보면, 내부주주 중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29.21%, 10.46%로 나타나고 있는바,¹⁵⁾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감면 효과가 이들 계층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

[국내 상장기업의 주주 유형별 지분 구성]

(단위: %)

구분	내부주주				외부주주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우리사주	자사주	외국인	소액주주	기타주주
전체	29.21	10.46	0.40	3.01	5.94	48.36	2.62

15) 이성복, 「국내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현황과 특징」, 자본시장연구원, 2024

□ 둘째,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비과세는 제한적으로 운용¹⁶⁾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정 제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법인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리사주조합 출연 등에 대한 다양한 비과세 혜택¹⁷⁾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세제상의 혜택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참고로,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로 주식을 양도하거나 우리사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 등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082호)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경영진에게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084호)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국회 논의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8

16) 「소득세법」 제89조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국가·지자체 등과 농지교환·분합(分合), 12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또는 분양권 양도,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에 따른 공부면적 감소에 의한 조정금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한정

17)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사주 및 금품에 대한 손금 인정(「법인세법」 제19조), 우리사주조합이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대주주 조합출연금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